

I. 목적 및 정의

목적

- ✓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통해
- ✓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
- ✓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

정의

- ✓ 디지털자산
- ✓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
 - 하나 이상의 법화(디지털자산인 법화는 제외한다, 이하 같다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연동되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으로서 **상환이 보장되는** 것을 말한다.

✓ 디지털자산업자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✓ 디지털자산매매·교환업 | ✓ 디지털자산중개업 | ✓ 디지털자산보관·관리업 | ✓ 디지털자산지급·이전업 |
| ✓ 디지털자산일임업 | ✓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 | ✓ 디지털자산대여업 | ✓ 디지털자산자문업 |
| ✓ 디지털자산 매매·교환 대행업 | | | |

II. 디지털자산업의 유형

1 디지털자산 매매·교환업	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도, 매수, 교환 또는 그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
2 디지털자산 중개업	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도, 매수, 교환의 중개나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
3 디지털자산 보관·관리업	타인의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보관 또는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
4 디지털자산 지급·이전업	-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지급 또는 이전을 영업으로 하는 것 - 지급: 지급인과 수취인 간 채권·채무관계를 <u>하나의 법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것</u> -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대금의 정산 및 관리 -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대금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 -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대금의 정산에 관한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 -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거래대금 예치 등 - 이전: <u>하나의 법화에 가치가 연동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제외한 그 밖의 디지털자산을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분산원장 주소 또는 계정에서 다른 주소 또는 계정으로 보내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</u>

Ⅱ. 디지털자산업의 유형

5 디지털자산 일임업	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·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
6 디지털자산 집합운용업	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모은 디지털자산을 이용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<u>다른 디지털자산을 취득·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</u>
7 디지털자산 대여업	<u>자기의 계산으로</u> 디지털자산을 대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
8 디지털자산 자문업	디지털자산의 가치 또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판단 등에 관하여 이용자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
9 디지털자산 매매·교환 대행업	디지털자산의 거래(매수, 매도 또는 교환 등을 포함한다)를 주선·알선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

IV.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

심의·의결 사항

- 1 디지털자산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
- 2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감독 및 규제 방향 설정
- 3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
-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

구성

금융위에 설치, 운영

위원장 1명을 포함한 **20명 이상 30명 이내**의 위원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

디지털자산 발행자, 디지털자산업자를 비롯한 **민간 위원이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**

V.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

◆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

- 공시 서류

-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**백서**(발행자) 또는 불충분한 백서를 법상 요건에 맞게 재작성한 **디지털자산설명서**(디지털자산업자)
- 이용자에게 실제 판매 또는 취득 권유시 사용할 **판매설명서**
- 디지털자산의 공시 서류는 **협회가 제출받아 형식적 심사 후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함**으로써 **효력 발생**

- 디지털자산을 판매 또는 취득 권유할 수 있는 자

- **국내에 설립된 법인**으로서 백서를 **협회에 제출하는 방식**으로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한 **발행자**
(발행자를 인수하거나 승계한 자를 포함)
- **외국에서 발행**된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그 백서/디지털자산설명서 및 판매설명서를 **협회에 제출하는 방식**으로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한 **디지털자산업자**
-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된 백서/디지털자산설명서 또는 판매설명서를 **사용하여**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을 판매 또는 취득 권유하려는 **디지털자산업자** 등

- 디지털자산의 판매 또는 취득 권유 가능시점

- 백서 또는 디지털자산설명서가 **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**, 다만 **사전판매(pre-sale)** 약정은 가능

V.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

◆ 백서 · 디지털자산설명서의 심사

- 심사주체: 협회
- 심사기간: 30일 (보완기간 최대 30일 미산입)
- 심사방식: 형식적 심사
 - 백서등이 이 법에서 정한 **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** 경우
 - 백서등이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에 **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**가 있는 경우
 - 백서 또는 디지털자산설명서 중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**불분명**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
- 효력발생: 통합공시시스템 게시(게시주체: 협회) 또는 제출일로부터 30일 경과

◆ 백서등의 정정

-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판매설명서를 **사용하여** 판매/취득권유하려는 **발행자나 디지털자산업자**는 판매설명서의 내용이 최근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
- 미반영된 경우, 발행자 또는 디지털자산업자는 최근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한 판매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

VI.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

적용범위



- ✓ 국내 발행된 모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(법화/자산 연동)
- ✓ 해외 발행된 원화 연동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

※ 해외 발행된 외화/자산 연동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, 국내 발행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디지털자산업자의 개별 영업행위 규제에서 취급 가능한 코인의 기준 제한에 대한 별도 근거규정 마련 (단, 보관·관리업은 제외)

적용제외



- ✓ 해외 발행된 원화 연동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경우, 다음 요건 충족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조항 적용 제외 가능

- 1) 해당 디지털자산이 이 법에 따른 규제와 동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에서 발행되고
- 2) 해당 발행국의 권한있는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경우

- ✓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발행자가 발행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평균 시가총액이 12개월동안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블록체인에서만 유통되는 경우 인가 면제, 다만 발행자로서 그 밖의 의무는 모두 준수

법적성격



- ✓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이나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2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.

VII. 디지털자산업 인가 및 등록

◆ 디지털자산업 유형

• 인가대상 (10억원 이상)

☒ 디지털자산매매·교환업

☒ 디지털자산중개업

• 등록대상 (5억원 이상)

☒ 디지털자산보관·관리업

☒ 디지털자산지급·이전업

☒ 디지털자산일임업

☒ 디지털자산집합운용업

☒ 디지털자산자문업

☒ 디지털자산매매·교환 대행업

◆ 인가 또는 등록 심사기간

- 인가: 총 3개월 (보완기간 90일은 미산입), 기간 도과 후 2주 경과하면 인가 간주 (→ 최대 6개월)
- 등록: 총 2개월 (보완기간 60일은 미산입), 기관 도과 후 2주 경과하면 등록 간주 (→ 최대 4개월)

VI.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관리

◆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요건

- 1)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, 금융기관, 외국 법인으로서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
- 2) **10억원 이상**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출 것
- 3)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
- 4)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
- 5)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의 안전성을 유지하기에 보안 기준으로서 **분산원장등에서 중요 기능에 대한 통제 권한에 대한 기준**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것
- 6) 임원이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적합할 것
- 7) 대주주나 외국 디지털자산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,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
- 8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**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**을 갖출 것
- 9) 발행자와 이용자 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**이해상충(利害相衝)**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
- 10) 이용자의 **상환청구권**을 보장할 수 있는 **적절한 상환정책**을 마련할 것
- 11) **준비자산의 구성과 운영**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
- 12) 그 밖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**발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**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